



보건복지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변경 안내

1. 관련

- 가. 보험급여과-1106호(2020.3.5.),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3058호(2020.3.24.), 보험급여과-4211호(2023.8.30.)
- 나. 「코로나19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업무(제10판) 개정안내」 - 중앙방역대책본부-10138호(2023.8.30.)

2.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(문의)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 등 :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
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

○ 주요 변경사항 ※ 그 외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은 붙임 참조

구분	기존	변경
산정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」 상 확진환자의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○ 요양병원 격리실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1인실 격리실 입원료 산정 	좌동
본인 부담금 지원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격리실에서 입원치료한 확진환자 ※ 코로나19 입원, 격리 치료비 지원업무(제9-1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중증 처치를 받은 환자 ※ 지원 세부기준은 코로나19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(제10판) 참고
적용 기간	2023. 8. 30. 까지	위기단계 조정(경계→주의)전까지 적용 2023.8.31. 진료분부터 적용

붙임 1. 코로나19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안내(변경)_최종.

보건복지부장관

수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,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요양병원협회장, 중앙방역대책본부장,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

행정사무관 **박소영** 보험급여과장 **정성훈** 전결 2023.9.1.

협조자

시행 보험급여과-4280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(어진동) / <http://www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2732 팩스번호 044-202-3934 / soyoung61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